

# 교수업적평가 시행세칙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 (목적)** 이 시행세칙은 교수업적평가규정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 제19조에 의하여 동 규정의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정의)** 이 세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“기준점수”라 함은 승진 및 연구보조비 차등지급에 기준이 되는 점수를 의미하며 유형에 따라 각 영역 기준점수를 달리 할 수 있다.
- ② “업적점수”라 함은 세칙이 정하는 연구, 교육, 봉사의 각 영역에 대한 점수를 합한 점수를 말한다.
- ③ “연구점수”라 함은 세칙이 정하는 연구 영역에서 취득한 점수의 합을 말한다.
- ④ “교육점수”라 함은 세칙이 정하는 교육 영역에서 취득한 점수의 합을 말한다.
- ⑤ “봉사업수”라 함은 세칙이 정하는 봉사 영역에서 취득한 점수의 합을 말한다.
- ⑥ “필수 연구업적”이라 함은 연구영역에서 세칙이 정하는 일정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, 저서 및 독주회 등의 업적을 말한다.

## 제2장 교육영역평가

**제3조 (교육영역)** ① 교육영역은 본 대학교의 정규 교육과정(주간 및 야간 학부, 대학원, 특수대학원, 전문대학원)에서 이루어진 교육과 교내·외를 통한 학생지도 등 제반 교육활동 등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.

- ② 평생교육원, 연수교육, 위탁교육 등의 특수교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.
- ③ 그 세부 평가항목, 기준 및 배점은 <표1>과 같다.

<표 1> 교육영역 평가항목, 기준 및 배점

번호	평가항목	평가기준		배점	비고
		만점기준	감점기준		
1-1	강의				
1-1-1	강의 담당 시수	① 학기당 책임시수이상은 60 점의 기본 점수 ② 학기당 책임시수에 미달시 혹은 책임시수에서 70%이상 초과시 학점 당 2점 감점(책임시수는 1년 단위로 계산함). * 현장실습은 강의 시수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. ③ 15시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1시수 당 예능계열은 4점 인문사회계열은 6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. ④ 야간, 교양, 80명 이상 대규모 강좌 중 1항목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강좌당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.		최대 120/학기	기본 항목
1-1-2	강의 계획서	기한내 입력	① 입력기간 이후부터 개강전 날까지 입력한 강좌 당 5점 감점 ② 개강일까지 미입력시 강좌	최대 50/학기	기본 항목

			당 10점씩 감점		
1-1-3	강의 평가	강의점수 × 10		최대 50/학기	기본 항목
1-1-4	강의 평가 활용	기한내 제출	20*(보고서제출강좌수/본인의 당해학기총강좌수) ※교무처양식제공	최대 20/학기	기본 항목
1-1-5	성적 입력 및 정정	기한내 입력 및 정정 없음	1)입력기한 초과일수 × -2점 2)정정횟수 × -1점 단 정정의 경우는 교수 과실의 경우에만 적용함.	최대 30/학기	기본 항목
1-1-6	결강유무 및 15주이상 수업여부	결강 및 15주 미만수업 없음	1. 결강신고 후 보강-> 감점 없음 2. 미신고결강 후 보강->결강 횟수X-5 3. 결강신고 후 미보강-> 결강횟수 X -10. 4. 미신고결강 후 미보강->결강횟수 X -10 5. 15주 이상 수업 -> 감점없음 6. 수업시간 미준수 및 15주 미만 수업 -> 해당 과목수X-5 7. 전자출결 7일 이내 출결체크 미준수-> 해당 과목수X-5	최대 20/학기	기본 항목
1-1-7	외국어 강의	외국어강의는 1학기에 1과목만 인정하며(내국인교수의 외국어강좌만 해당됨) 회화과목강의는 외국어강의로 인정하지 않음.		최대 20/학기	권장 항목
1-1-8	공동강의	공동으로 강의 한 경우 1학기에 1과목만 인정		10/학기	권장 항목
1-2	학생지도	평가기준		배점	
1-2-1	학생 입장 지도	참석률×100점 ※ 영어 원어민은 주당 2시간 이상의 영어센터 근무 및 여름방학 중 AIE 활동으로 대체 ※참석률산정기준 가. 기본 입장지도: 신입생 OT, 개강 및 종강예배, 모꼬지, 학과 단위의 행사참여.(단 사유가 있는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함) 나. 학과 입장지도: 학과에서 인정한 입장지도 ※참석률=입장지도회수/(기본+ 학과 입장지도) ※ 원어민 영어센터 근무점수는 시간당 10점으로 하며 AIE 활동점수는 30점으로 한다		최대 100/평가년도	
1-2-2	담임교수	학부 또는 대학원의 담임교수, 전공주임교수 및 교회음악과의 전공 주임교수를 맡았을 경우 1학기당 20점을 부여한다. ※ 영어 원어민은 주당 1시간의 English Center 근무로 대체		최대 20/학기	
1-2-3	학생 상	1.학생상담X 3		최대 120/연간	

	담 및 멘토링	2.학생연주참관X 3 ※학기별 상담일지 제출 또는 학기별 상담보고서 제출 (1년치 제출)		
1-2-4	진로(취업, 진학, 논문지도, 졸업연주) 지도	① 졸업생의 취업을 추천하여 취업 한 경우 1명당 10점을 부여한다. (해당학생의 추천서와 재직증명서 제출, 취업은 교과부기준에 따른다.) ②재학생 및 졸업생의 취업, 인턴, 진학과 관계된 추천을 하였을 경우 1명당 5점을 부여한다. 단, 추천서 사본이나 취업을 확인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 * 확인서는 대상 학생의 기본 인적사항, 기관명, 기관 전화번호, 해당 교수의 확인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. ③학과에서 취업준비를 위한 세미나 개최나 프로그램 운영시, 학과 교수들에게 10점을 부여한다. 단 연간 1회에 한한다. ④논문지도를 받은 학생이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하며, 논문지도 학생 1인당 석사 5점, 박사 10점을 부여 ⑤교회음악과의 경우 학부의 졸업연주지도는 1인당 5점을 부여하고, 연간 최대 8명까지 인정한다.		①항목은 점수의 제한 두지 아니하고, ②③④⑤항목의 총점수는 최대 40/연간을 넘을 수 없다.
1-2-5	스터디 그룹	학기당 10회이상=40 5회~9회=30 4회 이하=20 ※스터디 그룹 일지 작성 제출해야 함		최대40/학기
1-3	교수개발	평가기준	배점	비고
1-3-1	교수기법 세미나 참석	1회당 20점	최대80/연간	대외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. (※만일 사유가 있어 불참 시 사유서 제출 및 자기 학습 보고서도 대체 가능)
1-3-2	교과목 개발	1건당 20점	최대20/연간	교과목 개발 인정에 대한 심사를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함.
1-3-3	교수기법 개발	1건당 20점	최대20/연간	교수기법개발 인정에 대한 심사를 업적평가위원회에서 함.(양식에 따라)
1-3-4	강의자료 공개	30/학기(강의자료) 50/학기(동영상)	최대80/학기	한 학기 분량의 수업동영상이나 자료를 별도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학생, 일반인에게 공개(동일과목은1회에 한해 50% 인정)
1-4	교육관련 수상	평가기준	배점	비고

1-4	교육 관련 수상	1)국제기구 및 국제단체의 수상, 서훈, 포상 = 30점/건 2)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상, 서훈, 포상 = 20점/건 3)공공기관, 민간단체, 교내 등의 수상 = 10점/건	30, 20, 10/건	교육관련 수상만 해당 됨
-----	----------	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

### 제3장 연구영역평가

**제4조** (인문·사회계열 연구영역 배점) ① 연구영역은 교수의 전공과 관련된 연구업적으로 증빙서류나 자료가 있는 것에 한정하여 평가한다.  
② 인문·사회계열의 평가항목, 기준 및 배점은 <표 2-1>과 같다.

<표 2-1> 인문·사회계열의 연구영역 평가항목, 기준 및 배점 <개정 2018. 8. 21.>

번호	평가항목	평가기준	배점	제출서류
2-1	논문			
	국제학술지	① 국제 전문학술지(SCI급) ② 국제 일반학술지(심사 제도가 있는 경우) - 발행처: 외국 기관 및 단체 (외국+국내 공동발행 포함) - 발행처: 국내 기관 및 단체 ③ 국제 일반학술지(심사 제도가 없는 경우) - 발행처: 외국 기관 및 단체 (외국+국내 공동발행 포함) - 발행처: 국내 기관 및 단체	900점 500점 400점 300점 200점	연구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혹은 게재 논문 별쇄본
2-1-1	(산출기준): - 전문학술지: 인문예술 A&HCI, 사회과학 SSCI 등 국제인용색인 DB(토크로이터사, 엘스비어사)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의 학술지.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® (SSCI) Arts & Humanities Citation Index® (A&HCI) - 일반학술지: 전문학술지를 제외한 학술지(학회, 대학부설연구소 등 비영리 학술단체가 외국어로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학술지) - 심사제도가 있는 경우, 이를 증빙하여야 함. - 공저의 경우 배점은 다음과 같음. 2인: 70% 3인: 50% 4인: 30% 5인 이상: 20% - 주 저자 및 교신저자의 경우 각각에서 10%를 가산함. -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발표시에 받은 점수의 50%를 공제한 차감점수를 부여함.			
2-1-2	국내학술지	① 국내 전문학술지 연구재단 등재지(후보포함) ② 국내 일반학술지(정기발행) ③ 국내 일반학술지(비정기발행)	300점 200점 100점	
	(산출기준): - ISSN이 있는 학술지만 인정함. - 전문학술지: 한국연구재단 등재지(후보지 포함)			



		* 국내: 2개국 이상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. 대회의 이름이 국제학술대회/국제심포지엄 등 '국제'를 포함하거나 이에 준할 것.		
2-4-2	국내학술대회	① 전국단위 학술대회 발표자	150점	2-4-2 은 연 간 최대 300점 까지 인정
		② 기타 학술대회 발표자(외부 공개)	120점	
	(공동)	(산출기준): - 원고 형식이 아닌 경우(예, 파워포인트, 포스터발표) 해당점수의 50%만 인정.		
2-4-3	좌장 또는 논 찬자/토론자	① 국제 대회 ② 국내 대회	50점/건 30점/건	프 로 그 램 홍보물
		(산출기준): - 국제대회란 위 국제학술대회 기준에 준함. - 국제대회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- 국내대회는 연 2건 이내로 제한함.		

**제5조 (인문·사회계열 연구영역점수 인정범위)** ① 모든 논문이나 저서는 교수업적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해당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.

② 승진이나 재임용(재계약)을 위한 연구실적물은 3인(3분의 1이상의 외부 인사 포함)이상의 평가를 받아 각 편이 평균 “우”이상인 것만 인정한다. 단, 연구재단 등재(후보)지에 실린 논문과 대학평가 보고서(교육부 주관 대학 전반에 관한 평가 보고서)는 평가하지 아니하고 배점대로 인정한다. <개정 2009. 3. 1., 2018. 8. 21.>

③ 연구업적의 경우 공동연구실적물에 관한 인정 환산율은 다음과 같다. 단, 대학평가 보고서(교육부 주관 대학 전반에 관한 평가 보고서)는 단독연구로 인정한다. <개정 2018. 8. 21.>

1. 2인 공동연구: 각 조항 단독연구의 70%
2. 3인 공동연구: 각 조항 단독연구의 50%
3. 4인 공동연구: 각 조항 단독연구의 30%
4. 5인 이상의 공동연구: 각 조항 단독연구의 20%

④ 작곡집의 경우는 ISBN 번호가 부착되어야 하며 없을 경우 배점의 50%를 인정한다.

⑤ 이미 게재된 논문과 10%이상 내용이 같은 논문은 인정하지 않으며(인용문과 예문 등은 중복에 해당되지 않음), 저서의 경우 이미 발표된 내용이 30%~ 70%인 경우 해당점수의 50%를 인정한다. 70% 이상 중복될 경우 점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.

⑥ 국내외 학술지 및 학술잡지에 서평을 게재한 경우는 각 해당점수의 30%를 인정한다.

**제6조 (예능계열 연구영역 배점)** ① 연구영역은 교수의 전공과 관련된 연구업적으로 증빙서류나 자료가 있는 것에 한정하여 평가한다.

② 예능계열의 평가항목, 기준 및 배점은 <표 2-2>와 같다.

<표 2-2> 예능계열의 연구영역 평가항목, 기준 및 배점

번호	평가항목	평가기준	배점	제출자료
2-1	피아노,성악, 오르간, 실용음악			
2-2-1-1	국제연주회	공인된 국제 연주회장에서 연주하는 독주회, 독창회	600점	프로그램 혹은 팸플릿과 녹음테이프나 녹음자료
2-2-1-2	국제기타연주회	2-2-1-1에 속하지 않는 국제 기타 연주로서 독주회, 독창회 (교회 및 대학에서 열린 음악회는 이에 속한다.)	360점	
2-2-1-3	국내연주회	공인된 국내 연주회장에서 연주하는 독주회, 독창회	450점	
2-2-1-4	국내기타연주회	2-2-1-3에 속하지 않는 국내 기타 연주로서 독주회, 독창회 (교회 및 대학에서 열린 음악회는 이에 속한다.)	360점	
2-2-1-5	2인 이상 연주회	① 공인된 연주회장에서의 2인 연주 30분 기준 ② 공인된 연주회장에서의 3인 연주 20분 기준 ③ 공인된 연주회장에서의 4인 연주 10분 기준 ④ 공인된 연주회장에서의 5인 이상 연주 7분 기준 ⑤ 공인된 연주회장에서의 전곡 반주 ⑥ 공인된 연주회장에서의 오라토리오 독창 (3곡이상) ⑦ 공인된 연주회장에서의 오라토리오 독창 (3곡미만)  ※ 연주자와 연주시간 두 조건이 모두 만족 되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만족 되지 않는 경우 두 조건 중 낮은 조건에 해당 되는 점수를 부여 함 단, 연주시간은 각 조건의 연주시간의 15%내외까지 기준시간으로 인정	① 300점 ② 210점 ③ 150점 ④ 90점 ⑤ 210점 ⑥ 150점 ⑦ 90점	
2-2-1-6	오케스트라 협연 (성악, 기악)	① 공인된 국제 연주회장에서의 오케스트라 협연 (20분 기준) ② 공인된 국내 연주회장에서의 오케스트라 협연 (20분 기준)	①300점 ②210점	
2-2	성악	평가기준	배점	
2-2-2-1	오페라 주역 (성악)	① 공인된 국제 오페라의 주역 ② 공인된 국내 오페라의 주역	① 600점 ② 450점	
2-2-2-2	오페라 조역 (성악)	① 공인된 국제 오페라의 조역 ② 공인된 국내 오페라의 조역	①300점 ②210점	
2-3	작곡	평가기준	배점	
2-2-3-1	신작발표	① 오페라, 오라토리오, 협주곡(30분 기준) ② 관현악곡(10분 기준) 칸타타(30분 기준) ③ 독주곡, 규모가 큰 합창곡 및 실내악곡(10분 기준) ④ 합창곡, 독창곡 및 독주곡 등 소품(5쪽 기준)	①600점 ②300점 ③300점 ④150점	팸플릿과 프로그램, 프로그램 혹은 팸플릿과 녹음테이프나 녹음자료
2-2-3-2	창작-작곡집	① 오페라, 오라토리오(100쪽 이상) ② 기타 (관현악곡 및 실내악곡, 60쪽 이상)	①450점 ②300점	
2-4	지휘	평가기준	배점	
2-2-4-1	국제	① 공인된 국제 연주회장에서의 전문 합창단 지휘(단독)	① 600점 ② 300점	프로그램 혹은 팸플릿과 녹음테이프나 녹음자료

		② 공인된 국제 연주회장에서의 기타 합창단 지휘(단독) ③ 국제 기타 합창단 지휘(단독) (교회 및 대학에서 열린 음악회는 이에 속한다.) ④ 국제 기타 합창단 지휘(공동)	③ 210점 ④ 90점	
2-2-4-2	국내	① 공인된 국내 연주회장에서의 전문 합창단 지휘(단독) ② 공인된 국내 연주회장에서의 기타 합창단 지휘(단독) ③ 국내 기타합창지휘 및 교내 합창단 정기연주회 지휘(단독) ④ 국내 기타 합창단 지휘(공동) ⑤ 공인된 연주회장에서의 오케스트라 협연	① 450점 ② 300점 ③ 200점 ④ 90점 ⑤ 150점	
2-5	공동	평가기준	배점	
2-2-5-1	음반제작	독주곡 또는 음반(피아노, 오르간, 성악, 지휘, 작곡, 실용음악 1인 제작)	300점	음반
2-6	기타	평가기준		
2-2-6-1	기타 논문, 저서, 학술발표 및 수상	인문계열 연구영역의 평가항목, 기준 및 배점에 준한다.		연구실적물 및 표창장 사본, 혹은 수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2-7	방송 출연			
2-2-7-1	방송 출연	① 공중파 TV 출연(연주) ② 공중파 라디오TV 출연(연주)	①100점 ②50점	

**제7조 (예능계열 연구영역점수 인정범위)** ① 업적내용은 발표회, 음반제작(CD, 레코드, 테이프 등)에 한한다.

② 업적내용의 평가는 팜플렛 혹은 프로그램과 함께 녹음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만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. 단, 3인 이상 연주의 경우 녹음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동일한 작품의 발표 및 연주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한 레파토리로 3년 이내에 행한 연주는 1회만 평가한다. 단, 레파토리의 50%이상이 변경되었을 경우 교수업적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다른 연주회로 인정할 수 있다.

④ 개인 독창회 및 독주회, 작곡 발표회, 지휘 등의 연주회는 공연 시간이 1시간 전후인 예술활동에 한하여 인정한다.

⑤ 주 전공이 아닌 연구실적은 본인이 받은 주 전공의 총점을 초과할 수 없다.

⑥ 음반제작은 연주시간이 1시간 전후 연주회의 음반을 500장 이상 제작한 경우에 한하고 동일한 프로그램의 연주와 음반은 1개만 인정한다.

⑦ 음반제작은 음반 제작 매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.

⑧ 종교 활동 및 수업과 연관된 연주회는 연구업적에서 제외한다. 단 「대학합창」

정기연주회는 예외로 한다.

- ⑨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연주회장이라 함은 200석 이상 전국규모 연주회장 혹은 음악회의 주최자가 정부, 공공단체 또는 교수업적평가 위원회가 심의한 전국규모 음악회를 말한다.
- ⑩ 오르간 전공의 경우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연주회장이라 함은 30 stop 이상의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교회 및 대학도 포함한다.
- ⑪ 순회연주는 1회로 인정 한다.
- ⑫ 기타 논문이나 저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.

## 제4장 봉사영역평가

- 제8조 (봉사영역)** ① 봉사영역은 교수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학교 운영과 발전에 기여한 정도와 사회에 대한 공헌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증빙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신청한 항목에 한하여 평가한다.
- ② 봉사영역의 평가항목, 기준 및 배점은 <표 3>과 같다.

번호	평가항목	평가기준	배점	제출서류
3-1	교내봉사활동			
3-1-1	보직활동	①기획위원 ②특수대학원장 및 각 학과장, 도서관장, 평생교육원장, 비서실장, ③부속 및 위탁기관장(생활관장, 보육정보센터장, 아동발달지원센터장, 한국카운셀링센터장, 사회봉사센터장), 전산실장, 교수학습개발센터장, 대학교회 담임목사, 모금센터장 ④기타 부속기관 및 교내 연구소장 및 실장(학보사 주간, 방송사 주간, 사회봉사단 책임지도교수, 각종 연구소장/실장, 교목, 어린이집지도교수, 보육교사교육원장, 산학협력단 산하 각종 사업단장, 각종 디렉터) ※상기에 명시 되지 않은 보직이 새롭게 발생 할 경우 교수업적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점수를 부여 할 수 있다.	①50점/학기 ②30점/학기 ③20점/학기 ④10점/학기	해당부서
3-1-2	위원회활동	①연구위원회 ②상설위원회 ③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위원회 *각 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물(회의록 또는 보고서)이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하며, 보고서 제출의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. *각 위원회 참석(위임은 불참으로 간주)이 60% 이상일 때에만 위원회 활동으로 인정함.	①10점/건/학기 ②10점/건/학기 ③5점/건/학기 최대 100점	해당부서
3-1-3	동아리 및 학생 단체 활동	①학교 및 학과에서 인정하는 동아리 지도교수 ②국내 및 국외 학생단체활동 지도	①5점/학기 ②5점/학기	①해당부서 및 학과장의 인정서

	지도		최대 20점	②임명장, 또는 기타 입증 서류
3-1-4	예배, 회의 및 기타활동	①교직원예배 ②학교채플 ③신양수련회 ④교수회의 참가 ⑤학과회의참가 ⑥교수연수회참가 ⑦학교(혹은 부처)주관 학교행사 참가 (80%이상 참석시 해당점수의 100%, 70%이상 참석시 해당점수의 80%, 60% 이상 참석시 해당점수의 60%. 단 예배의 경우 60%미만 참석시 봉사영역 0점 처리함. 야간 채플 1회 출석은 주간 채플 2회로 인정함).	①10점/학기 ②10점/학기 ③10점/학기 ④10점/학기 ⑤10점/학기 ⑥10점/학기 ⑦5점/건(연간 최대 20점)	해당부서
3-1-5	기타 봉사	교수협의회 회장 교수협의회 총무 대학평의회 위원	50점/학기 20점/학기 20점/학기	본항목은 중복인정하지 않음
3-2	학술단체활동	평가기준	배점	비고
3-2-1	국제학술단체	① 임원 *임원에는 학회장, 부회장, 총무(서기,회계), 분과장, 지부장, 이사, 감사가 포함된다. ②국제학술단체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편집위원 ③국제학술대회 진행(좌장) ④상임고문, 상임자문위원	①10점/학기 ②10점/학기 ③5점/건 ④3점/학기 연간 최대 30점	①②④위촉장, 혹은 학회지에 실린 임원 혹은 편집위원 명단 ③proceedings
3-2-2	국내학술단체	①임원 *임원에는 학회장, 부회장, 총무(서기,회계), 편집위원장, 이사, 감사가 포함된다. ②학술단체의 분과장 ③학술단체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편집위원 ④상임고문, 상임자문위원 *3-2-1, 3-2-2 중 동일 학술단체에서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될 경우 상위 한 항목만 인정	①5점/학기 ②4점/학기 ③4점/학기 ④3점/학기 연간 최대 30점	위촉장, 혹은 학회지에 실린 임원 혹은 편집위원명단
3-3	교회 및 사회활동			
3-3-1	교단 및 교계 활동	①교단 및 교계 각종위원회의 위원 ②각 선교단체의 임원 ③교회내의 직분 활동 ④교회의 설교 ⑤교회의 강연, 특송 ⑥교회의 기타활동(교사, 성가대 등)	①10점/학기 ②10점/학기 ③10점/학기 ④⑤5점/건 ⑥10점/학기 연간 최대 60점	①②③⑥위촉장, 혹은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⑤주보, 팸플릿 혹은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3-3-2	국내외 각종 기구위원	①국제기구위원 ②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(시·도), 한국연구재단,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각종 위원 ③기초자치단체(시·군·구), 공공기관 및 전국규모 사회시민단체의 각종 위원, 국가고시 출제위원 ④지방규모 사회시민단체,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	①10점/건 ②8점/건 ③5점/건 ④3점/건 연간 최대 60점	위촉장, 임명장, 혹은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		의 각종 위원		
3-3-3	언론 및 사회 활동	①중앙 언론매체(10대 일간지: 조선, 중앙, 동아, 서울, 경향, 한겨레, 한국, 국민, 문화, 5대 방송: KBS, MBC, SBS, EBS, CBS) 게재 및 출연 ②기타 언론매체(기타 일간지 및 방송, 케이블 방송) 게재 및 출연 ③잡지 및 인터넷 매체 게재 ④각종 강연 *제출된 업적물의 분량과 중요도에 따라서 교수 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산점 부여 가능함	①10점/건 ②7점/건 ③5점/건 ④5점/건 연간 최대 60점	게재기사의 사본, 오디오 혹은 비디오테이프 항목오류 정정
3-3-4	토론회 및 공청회 등	① 전공관련 중앙 및 전국 단위 조직의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의 발표자 ② 전공관련 중앙 및 전국단위 조직이 아닌, 외부에 공개하는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의 발표자 * 1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내부 토론회 등은 제외(예, 교회, 사회복지관, 어린이집 등)	15점 10점	3-3-4 은 최대 30점을 넘을 수 없음
3-4-1	대학발전기금 및 장학금 유치	①연간 10억원이상 ②연간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③연간 1억원이상 5억원미만 ④연간 5천만원이상 1억미만 ⑤연간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⑥연간 1백만원이상	①200점 ②150점 ③100점 ④50점 ⑤30점 ⑥5점	해당부서
3-4-2	대학발전기금 및 장학금 기부	①연간 3백만원이상 ②연간 1백만원~3백만원미만 ③연간 1백만원미만	①30점 ②20점 ③10점	해당부서
3-4-3	외부연구비유치	① 3,000만원이상 ② 1,000만원이상 ③ 500만원이상 ④ 100만원이상 (산출기준): - 교내연구비는 해당되지 않음 - 연구비는 계약(협약)된 금액으로, 현금만 포함함. - 위 기준 금액에서 10%범위 내 오차는 허용함. -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인정함. 다년 계약의 경우 해당연도의 연구비만 포함. 단, 중간 보고서/발표문 등이 첨부되어야 함.	90점 70점 50점 30점	
3-4-4	기타	①대학발전 기여 *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현저하게 대학의 명예를 높였다고 인정하는 경우. ②산학협동 기여	①10점/건 ②5점/건	①해당부서 ②산학협동 기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3-5	봉사관련 수상			
3-5-1	봉사관련 수상	①국제기구 및 국제단체의 수상, 서훈 및 포상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상, 서훈 및 포상 ③공공기관, 기업체, 시민사회단체, 교내 등의 수상	①15점/건 ②10점/건 ③5점/건	표창장 혹은 수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**제9조 (봉사영역 점수 인정범위)** ①연구위원회라 함은 특정 과제를 연구하도록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는 위원회를 의미한다.

- ② 보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상위 보직의 것만 인정한다. 단 연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경우는 제외한다.
- ③ 시민·사회단체라 함은 정부에 등록된 기관에 한한다.
- ④ 학술진흥재단,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기관위원이라 함은 일회성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 전문성을 기초로 봉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대학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포함된다.

## 제5장 평가의 유형과 결과 산출

**제10조 (기준점수와 평가유형)**본 대학교 교수의 연간 기준점수는 1000점이며 평가 유형은 다음과 같이 두 종류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기준점수의 영역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기본형: 교육영역 600점, 연구영역 300점, 봉사영역 100점으로 한다.
- ② 봉사중심형: 교육영역 500점, 연구영역 200점, 봉사영역 300점으로 한다
- ③ 연구중심형: 교육영역 450점, 연구영역 500점, 봉사영역 50점으로 한다. 단 연구중심형은 정년교원의 15% 내에서 총장이 결정한다.
- ④ 특별한 경우(출산, 질병, 사고 등) 최근 3년간 업적의 평균점수를 부여한다. 이 경우 교수업적평가 최종점수는 A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전에 교수업적 평가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.
- ⑤ 정년퇴직을 3년 남겨놓은 경우 각 영역의 취득 점수 기준을 70%로 한다.(교육 420점, 연구 210점, 봉사 70점) 단 정교수의 경우 연간 18학점 강의를 전제로 평가면제신청서를 제출 할 경우 평가를 면제 할 수 있다. 단 시행세칙 제4장 3-1-4항에 규정된 사항은 준수하여야 기준점수를 충족 한 것으로 한다.
- ⑥ 각 영역이 기준치에 모자랄 경우 각 영역의 15%(교육-90점, 연구 45점, 봉사15점)를 상호 호환 할 수 있다. 단 무단결근 3회 이상인 교원은 각영역의 점수를 상호 호환 할 수 없다.
- ⑦ 연구업적은 KRI 입력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KRI의 입력항목에 없는 연구업적은 본교 교수업적평가 입력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
- ⑧ 업적평가 세부 항목에 포함되지 않지만 평가받기 원하는 특별한 사항의 경우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영역 또는 봉사영역의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. 단 연간 최대 30점을 초과 할 수 없다.
- ⑨ 연구영역은 논문이나 저서, 연주회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
- ⑩ 무단결근 3~4회인 교원은 평가유형별 교육영역의 기준점수(기본형:600점, 봉사중심형: 500점, 연구중심형: 450점) 이상을 취득 할 수 없고 무단결근 5회 이상인 교원은 전체평가 등급을 C이상 넘을 수 없다.

**제11조(평가등급)** 평가결과의 등급은 다음과 같다.

- ① 각영역의 기준점수를 충족하고 1200점 이상인 경우 A등급(단, 만63세 이상의 교

- 수는840점이상)
- ② 각영역의 기준점수를 충족하고 1000점 이상1200점 미만인 경우 B등급(단, 만63세 이상의 교수는700점이상)
  - ③ 각영역의 기준점수를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1000점 미만인 경우 C등급(단, 만63세 이상의 교수는 700점미만)

## 제6장 평가결과의 활용 및 관리

**제12조** (평가결과의 활용) 교수업적평가의 결과는 교원승진에 활용되며 각 직급별 승진 기준은 교원인사승진내규에 따른다.

**제13조** (기간제 재임용 및 재계약 임용) 기간제 재임용 및 재계약 임용은 다음과 같다.

- ① 해당 기간의 각 영역별 기준점수의 80% 이상을 취득한 자는 재임용 및 재계약될 수 있다.

**제14조** (성과급 및 포상) ① 평가결과가 A인 경우 소정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며, 지급액은 별도로 정한다.

- ② 평가결과 총 점수 상위 3인, 연구영역 상위3인, 취업추천(실재취업한 경우만 해당) 상위3인, 대학발전기금 모금 상위3인 및 각 영역 최고 득점자에 대해 총장이 시상하며 지급액은 별도로 정한다. 단 중복수상은 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차상위 수상을 인정 하지 않는다. 연구영역은 SCI급논문이나 학진등재(후보)의 논문으로 순위를 산정한다.
- ③ 3년 연속 상위 10%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이 시상하며 지급액은 별도로 정한다.
- ④ 평가 결과가 C인 경우 직전년도 연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 0.5%를 다음연도 보수에서 감액 지급 한다. 연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이라 함은 연간급여, 제수당, 강의료, 연구비등 연간 대학에서 수령한 모든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.
- ⑤ 정당한 사유없이 교수업적평가자료를 입력하지 않거나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C를 받은 경우 연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 3%를 감액 지급한다.
- ⑥ 2년 연속 C를 받은 경우 연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 3%를 감액 지급한다.
- ⑦ 3년 연속 C를 받은 경우 연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 5%를 감액 지급한다
- ⑧ 감액된 금액은 연구목적에 사용한다.
- ⑨ 대학에서 경고, 주의 등을 받은 경우 시상(포상)에서 제외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규정의 개폐) 이 세칙은 교무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으로 개정할 수 있다.
- ③ (경과조치) 시행일 이전의 업적평가는 2002년 2월 1일자의 교원인사 승진에 관

한 내규와 교원재임용(재계약)지침서를 따른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개정 세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본 세칙 12조에 의한 교원인사승진은 교원인사승진 내규가 변경시행 되는 2012년 9월 1일 이후 적용되며 그 이전의 교원인사승진은 변경전 본 세칙 규정으로 적용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세칙은 201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세칙은 2013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세칙은 2015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세칙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세칙은 2018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.